

의안번호	2218640
의 퇴 인	이준석의원
회 답 일	2026.8.31.
추계번호	26D2369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9조제1항 (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)	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의 제공기반조성, 제공현황, <u>안정성 확보</u> 등 제공 운영실태 를 평가하여야 함 ※현행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, 제공현황 등의 운 영실태에 대하여 평가하도록 규정	의무규정
2	안 제26조의2 (공공데이터 제 공 안정성 확보)	공공기관의 장은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동률, 응답시간, 갱신주기 등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함	의무규정
		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개할 수 있음	재량규정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9조제1항(공공 데이터의 제공 운영 실태 평가)	(미대상) ○ 현행법 제9조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 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,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, 제22조는 행정안전부장 관이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함 ¹⁾ ○ 개정안에 따라 실태조사 평가 항목으로 안정성 확보 기준이 추가 되더라도 현재 실시 중인 공공데이터 운영실태 평가 수행 및 기 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
2	안 제26조의2(공공 데이터 제공 안정성 확보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 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1) **현행법 제9조(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)**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(국회·법원·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,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.

2. 상세 사유

□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확보 관련(안 제26조의2)

- 개정안이 시행되는 경우, 공공기관의 장이 가동률, 응답시간, 갱신주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제공 시스템의 기능을 보완하고 이에 대한 관리·감독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,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- 다만, 현 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야 하는 가동률, 응답시간, 갱신주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려워 이와 관련된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어려움
- 참고로, 행정안전부는 현행법 제11조에 근거하여 「공공데이터 관리지침」을 수립하였으며, 현행법 제22조 및 「공공데이터 관리지침」 제23조·제24조²⁾에 따라 공공데이터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 확보를 위한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, ‘공공데이터 제공 주기 준수율(갱신 주기)’은 현 운영실태 평가의 평가지표로 관리하고 있으나, ‘가동률, 응답시간’ 등은 운영실태 평가의 직접적인 지표로 활용하고 있지 않음

현행법 제22조(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)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의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품질 진단·평가, 개선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·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·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.

2) 「**공공데이터 관리지침(행정안전부고시 제2021-70호)**」 제23조(품질진단 및 개선)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22조제1항에서 수립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소관 공공데이터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. 특히, 소관 공공데이터를 새롭게 제공하거나 제공 중인 공공데이터를 갱신하는 시점에는 반드시 품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,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등 개선조치를 취해야 한다.

제24조(품질관리 평가 및 조치)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·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·평가를 위해 평가대상, 추진체계, 절차 및 기간,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포함한 공공데이터 품질 진단·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, 공공데이터의 정확성, 유효성, 일관성 등 품질관리 수준진단에 적용할 기준과 지표를 제시해야 한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계획 및 평가기준·지표 등을 평가대상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, 진단·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공공데이터에 대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<참고> 현재 실시 중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운영실태 평가 기준

영역	평가지표		기관 유형						
	지표명	방식	중앙	광역	기초	공기업·준정부기관	지방공기업	기타 공공기관	시도교육청
1. 개방·활용 (50)	메타관리시스템 기반 공공데이터 개방계획 수립 및 이행	정량	12	12	16	12	12	16	12
	AI 친화고가치 데이터 개방 노력	정성	10	10	8	10	10	8	10
	개방데이터 이용자 지원 실적	정량	6	6	6	6	6	6	6
	공공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성과	정량, 정성	22	22	20	22	22	20	22
	가명정보 제공 및 합성데이터 개방 실적가점	정량	5						
2. 품질 (45)	데이터 품질관리 체계	정량	17	17	17	17	17	17	17
	데이터 값 관리	정량	18	18	18	18	18	18	18
	진단결과 조치	정량	10	10	10	10	10	10	10
3. 관리 체계(5)	추진기반 조성	정량	3	3	3	3	3	3	3
	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교육 참여	정량	2	2	2	2	2	2	2

자료: 행정안전부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전상욱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전상욱	02-6788-4673	flyhigh@assembly.go.kr